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08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허 영 · 박지원 · 김영환  
박균택 · 홍기원 · 한민수  
박상혁 · 송옥주 · 조인철  
황정아 · 강준현 · 박 정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

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적 회복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 회복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7조의2(국적 회복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u></p>